

2022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청안내

□ 사업목적

-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

□ 신청대상

-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
 - ※ **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**
- 신청제품중 신제품(NEP)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

※ 신제품(NEP)인증 제외 대상

1.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2.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3.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4.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5. 식품, 의약품 및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
6.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7.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8.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

□ 지원제도

-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, 인증제품 수의계약,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
-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(기술보증기금)
- 각종 정부 R&D사업 신청·참여시 우대(가점부여) 등

□ 신청접수

- 신청기간: **2022. 6. 24(금) ~ 7. 25(월) 18시 까지**
- 신청절차: 온라인(<https://www.nepmark.or.kr>) 신청
- 사업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[www.nepmark.or.kr] - 공지사항 참고

□ 문의처

-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 37길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
신제품(NEP)인증 담당자 ☎(02) 3460-9185~8. 끝.